시간제등록생운영규정 5-1-2

규정번호 5-1-2
제정일자 2000.3.1
최근개정 2018.8.27
개정차수 9차 개정
관리부서 평생교육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학칙 제23조의 15에 의거 시간제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한 학생은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.

제3조(등록자격) 대학(교) 휴학생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제4조(선발방법) 시간제등록생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선발하며,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등록인원) 등록인원은 총 입학정원 10% 이내로 한다.

제6조(교육과정) 교육과정은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반으로 편성하여 각각 운영한다.

제7조(이수학점) ① 시간제등록생의 이수가능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까지로 한다.

② 시간제등록으로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

제8조(등록) 시간제등록생은 전일제학생 납입금의 20분의 1내에서 1학점당 등록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.(개정 2016.3.1.)

제9조(학위수여)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우리대학 동일 학과에서 4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, 전체 취득학점이 80학점 이상일 경우 우리대학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우리대학의 교양과목 중 '인성채플'과 '성경과 삶'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12.08., 2018.08.27)

③ 제1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자 중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(신설 2015.2.16)

④ 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를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10조(학생활동금지)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한 자는 우리대학의 총학생회 등을 비롯한 어떠한 학생활동을 할 수 없다.

제11조(징계) 우리대학의 학칙, 이 규정 및 기타 내규를 위반한 자는 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학칙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54> <생략>

<55> 시간제등록생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, 제9조③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56> - <102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